

제 1497 호
1990. 6. 20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고 건수
편집인 : 공보관 유 천 수
전화 : 731-6111~3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35-3337

시 보

차 례

- 규 칙
 - 제2345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3
- 교 육 규 칙
 - 제 351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14
- 고 시
 - 제186호 도시계획사업(전세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시행변경허가 14
 - 제188호 도시계획시설(녹지)시적승인 15
 - 제194호 수입배합사표성분등록 15
 - 제195호 서울특별시문화재지정고시 16

<이면계속>

양																			
량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1535

● 공 고

제363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17
제366호	천호제3구역주택개발사업공사완료공고	18
제367호	K·S표시정지처분	18

● 구 고 시

제 45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구로)	18
--------	------------------	----

● 구 공 고

제 29 호	특정철삭용기자재시공업소행정처분공고(강서)	19
제 60 호	관인재교부공고(마포)	20
제255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조치해제(도봉)	20

● 사

규 칙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증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0. 6.

서울특별시장 고 건 ㉔

㉔서울특별시규칙제2345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증
개정규칙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시행규
칙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를
“주차안내원이 30분마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주차요금 고지서발급)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
는 관리수탁자는 별지제1호 서식의 주차
요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7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2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2호서식 및 별
지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1.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의 지불을
기부하는 경우
3. 주차시간측정기에 요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4.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납부고
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일내에 주차요금
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주차구획선)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
한 주차구획선은 도로의 폭, 교통량과 주
차장의 면적, 지형등을 참작하여 별도의
평행주차, 직각주차 또는 사각주차방식에
의한 구획선을 차방 진행방향으로 표시하
되, 표시선은 백색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중 “노외주차장(이하 “시영주차장”이
라 한다)을 “노외주차장”으로, “발행하되
5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를 “적정한
수준으로 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주차장의 이용편의 및 관리의 적
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권 및 정기권의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기계식주차장의 대수인정)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
의 주차대수의 산정기준은 수직순환식 주
차시설·다층순환식 주차시설·수평순환
식 주차시설·승강식 주차시설·승강기슬
라이드식 주차시설 및 명면 왕복식주차시
설에 있어서는 각각 당해주차시설의 주차
구획대수로, 2단계식 주차시설(동일방식
의 3단계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주차시설별로 1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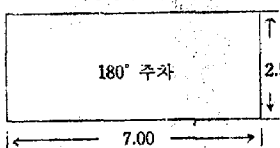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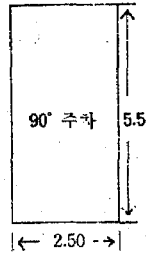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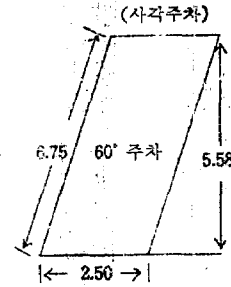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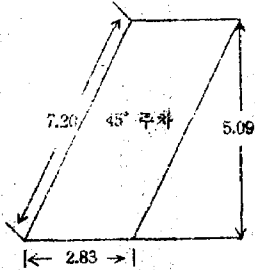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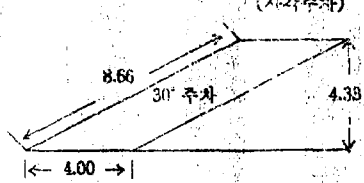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등
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 대 조 표	
현	행
개	정
안	안
제2조(주차장이용안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2조(주차장이용안내)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시장이 별도 지정하는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장에 부착하도록 한다.	2. 주차안내월으로 하여금 30분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주차요금징수시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주차요금 고지서발급)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간은 7일로 한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2. 주차카드를 차장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차장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나갈 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제4조(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조례제4조의	(삭 제)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가 주차카드를 위탁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가 용이하게 주차카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주차장인근의 장소를 선정하여 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가산금부과)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하고 노의주차장등 주차표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제5조(가산금부과)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현행	개정안
<p>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은행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3. 주차시간측정기에 요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4.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일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p>제6조(노상주차장구획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구획선은 도로의 너비와 교통량을 고려하여 차량진행방향으로 평행주차·직각주차·사각주차(60도, 45도, 30도)로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표시하여야 하며, 주차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p>	<p>제6조(주차구획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구획선은 도로의 폭, 교통량과 주차장의 면적, 지형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평행주차·직각주차 또는 사각주차방식에 의한 구획선을 차량 진행방향으로 표시하되, 표시선은 백색으로 하여야 한다.</p>
<p>제7조(회수권 및 정기권) 시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시영주차장"이라 한다)이용자에게 발행하는 회수권 및 정기권은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과 같이 하며, 정기권은 당해 주차장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발행하되 50%를 초과할 수 없다.</p>	<p>제7조(회수권 및 정기권) ①..... 노외주차장 이용자..... 적정한 수준으로 발행하여야 한다.</p>
<p>(신 설)</p>	<p>②시장은 주차장의 이용편의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권 및 정기권의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12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주차대수산정)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기준은 수직순환식 주차시설·다층순환식주차시설·수평순환식 주차시설·승강식주차 시설·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시설 및 평면 왕복식주차시설에 있어서는 각각 당해 주차시설의 주차구획대수로, 2단계식주차시설(동일방식의 3단계 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p>

현행	개정안
<p>(신설)</p>	<p>당해 주차시설별로 1대로 한다.</p> <p>부칙</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주차구획선구획표시도</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text-align: center;"> <p>(평행주차)</p>  <p>180° 주차 2.50 7.00</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직각주차)</p>  <p>90° 주차 5.50 2.50</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사각주차)</p>  <p>6.75 60° 주차 5.58 2.50</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start;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사각주차)</p>  <p>7.26 45° 주차 5.09 2.83</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사각주차)</p>  <p>8.66 30° 주차 4.33 4.00</p> </div> </div>	

<p>[별지 제1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주차요금 납부고지서(은행보편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번호</td> <td>서울특별시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td> </tr> <tr> <td>주차장소</td> <td></td> </tr> <tr> <td>차량번호</td> <td></td> </tr> <tr> <td>차 종</td> <td></td> </tr> <tr> <td>입차시간</td> <td>시 분</td> </tr> <tr> <td>출차시간</td> <td>시 분</td> </tr> <tr> <td>주차시간</td> <td>시 분</td> </tr> <tr> <td>주차요금</td> <td>W</td> </tr> <tr> <td>납부기한</td> <td>년 월 일</td> </tr> <tr> <td>납부장소</td> <td>시내 각은행본, 지점 농협 및 우체국</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설관리공단이사장</p>	번호	서울특별시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	주차장소		차량번호		차 종		입차시간	시 분	출차시간	시 분	주차시간	시 분	주차요금	W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시내 각은행본, 지점 농협 및 우체국	<p style="text-align: center;">영수필통지서(공단통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번호</td> <td>서울특별시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td> </tr> <tr> <td>주차장소</td> <td></td> </tr> <tr> <td>차량번호</td> <td></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관) 사업수입 (항) 사업수입 (목) 사용료수입(주차장요금)</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30px; margin: 0 auto;">일금</div> </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W</td> </tr> </table> <p>고지서발부일시: 년 월 일</p> <p>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동지함.</p> <p style="text-align: center;">1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설관리공단이사장</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p>	번호	서울특별시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	주차장소		차량번호		(관) 사업수입 (항) 사업수입 (목) 사용료수입(주차장요금)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30px; margin: 0 auto;">일금</div>		W		<p style="text-align: center;">주 차 요 금 납 부 안 내</p> <p>○ 주차요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별 제9조 제3항에 의거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내리게 됩니다.</p> <p>○ 귀하께서 납부하신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됩니다.</p> <p>○ 문의처 본사업연부 : 455-8471(교)334</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시설관리공단이사장</p>
번호	서울특별시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																																	
주차장소																																		
차량번호																																		
차 종																																		
입차시간	시 분																																	
출차시간	시 분																																	
주차시간	시 분																																	
주차요금	W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시내 각은행본, 지점 농협 및 우체국																																	
번호	서울특별시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																																	
주차장소																																		
차량번호																																		
(관) 사업수입 (항) 사업수입 (목) 사용료수입(주차장요금)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30px; margin: 0 auto;">일금</div>																																		
W																																		

제1497호 시 1990. 6. 20 26-7

주차요금 납부고지 보고서

번호	서울특별시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		
주차장소			
차량번호			
차종			
입차시간	시	분	
출차시간	시	분	
주차시간	시	분	
주차요금	₩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시내 작은행본,지점 농협 및 우체국		
주차안내인	②		
	19	년	월 일
서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영 수 증

번호	서울특별시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		
주차장소			
차량번호			
(관) 사업수입 (합) 사업수입			
(목) 사용료수입(주차장요금)			
일금			
	₩		
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19	년	월 일

<p>주차요금 및 가산금고지서(은행보관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번호</td> <td>서울특별시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td> </tr> <tr> <td>주차장소</td> <td></td> </tr> <tr> <td>차량번호</td> <td></td> </tr> <tr> <td>차종</td> <td></td> </tr> <tr> <td>입차시간</td> <td>시 분</td> </tr> <tr> <td>예정출차시간</td> <td>시 분</td> </tr> <tr> <td>출차시간</td> <td>시 분</td> </tr> <tr> <td>주차(초과)시간</td> <td>시간 분</td> </tr> <tr> <td>부과사유</td> <td></td> </tr> <tr> <td>주차(초과)요금 W</td> <td></td> </tr> <tr> <td>주차(초과)시간 × $\frac{500\text{원}}{200\text{원}} \times 2\text{배}$ (30분 기준)</td> <td></td> </tr> <tr> <td>30분이내는 30분으로보고 1급저 노상 주차장의 경우 2시간초과사 부터 30분단 1,000원을 부과한다.</td> <td></td> </tr> <tr> <td>적용범위</td> <td>주차장법 제9조 제3항</td> </tr> <tr> <td>납부일시</td> <td>19 년 월 일</td> </tr> <tr> <td>납부장소</td> <td>시내은행(한국·산림은행 제외)본,지점,농협,수협, 중앙중앙회본,지점 및 우체국</td> </tr> <tr> <td>주차안내원</td> <td>①</td> </tr> <tr> <td></td> <td>19 년 월 일</td> </tr> <tr> <td></td> <td>서울시설관리공단이사장</td> </tr> </table>	번호	서울특별시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	주차장소		차량번호		차종		입차시간	시 분	예정출차시간	시 분	출차시간	시 분	주차(초과)시간	시간 분	부과사유		주차(초과)요금 W		주차(초과)시간 × $\frac{500\text{원}}{200\text{원}} \times 2\text{배}$ (30분 기준)		30분이내는 30분으로보고 1급저 노상 주차장의 경우 2시간초과사 부터 30분단 1,000원을 부과한다.		적용범위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납부일시	19 년 월 일	납부장소	시내은행(한국·산림은행 제외)본,지점,농협,수협, 중앙중앙회본,지점 및 우체국	주차안내원	①		19 년 월 일		서울시설관리공단이사장	<p>영수필통지서(공단통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번호</td> <td>서울특별시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td> </tr> <tr> <td>차량번호</td> <td></td> </tr> <tr> <td>주차장소</td> <td></td> </tr> <tr> <td>(관)사업수입 (항)사업수입</td> <td></td> </tr> <tr> <td>(목)사용료수입(주차장요금 및 가산금)</td> <td></td> </tr> <tr> <td>인금</td> <td></td> </tr> <tr> <td>W</td> <td></td> </tr> <tr> <td>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불지함.</td> <td></td> </tr> <tr> <td>고지서발부일시:</td> <td></td> </tr> <tr> <td></td> <td>19 년 월 일</td> </tr> <tr> <td>서울특별시 금고</td> <td></td> </tr> <tr> <td></td> <td>19 년 월 일</td> </tr> <tr> <td>서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td> <td></td> </tr> <tr> <td>은행</td> <td>지점 ②</td> </tr> </table>	번호	서울특별시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	차량번호		주차장소		(관)사업수입 (항)사업수입		(목)사용료수입(주차장요금 및 가산금)		인금		W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불지함.		고지서발부일시:			19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고			19 년 월 일	서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은행	지점 ②	<p>주차요금 및 가산금납부통지서</p> <p>○ 귀하께서는 소정의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및 관계시 조례에 의거 소정의 주차료와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p> <p>○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서울시 주차장 관리지침 제7조) - 주차계기 설치지역: 계기에 동전을 미투입시 또는 주차표 표시가 되었을 때 (차량발견시 최소 한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며, 부과후 30분부터 30분 단위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 주차카드 부착지역: 주차후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주차장을 이탈하였거나 주차요금 납부를 거부하였을 때</p> <p>○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발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지 아니 하였을 때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징수됩니다.</p> <p>○ 귀하께서 납부하신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 시정 주차장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서 사용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문의처 행정사무소 : 274 - 0069 · 743 · 9455 587 · 4937 · 701 · 7368 본사 : 455 8471 ~ 3 (W) 331</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시설관리공단이사장</p>
번호	서울특별시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																																																																	
주차장소																																																																		
차량번호																																																																		
차종																																																																		
입차시간	시 분																																																																	
예정출차시간	시 분																																																																	
출차시간	시 분																																																																	
주차(초과)시간	시간 분																																																																	
부과사유																																																																		
주차(초과)요금 W																																																																		
주차(초과)시간 × $\frac{500\text{원}}{200\text{원}} \times 2\text{배}$ (30분 기준)																																																																		
30분이내는 30분으로보고 1급저 노상 주차장의 경우 2시간초과사 부터 30분단 1,000원을 부과한다.																																																																		
적용범위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납부일시	19 년 월 일																																																																	
납부장소	시내은행(한국·산림은행 제외)본,지점,농협,수협, 중앙중앙회본,지점 및 우체국																																																																	
주차안내원	①																																																																	
	19 년 월 일																																																																	
	서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번호	서울특별시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																																																																	
차량번호																																																																		
주차장소																																																																		
(관)사업수입 (항)사업수입																																																																		
(목)사용료수입(주차장요금 및 가산금)																																																																		
인금																																																																		
W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음을 불지함.																																																																		
고지서발부일시:																																																																		
	19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고																																																																		
	19 년 월 일																																																																	
서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은행	지점 ②																																																																	

제1497호 시

보 1990. 6. 20

38-9

주차요금 및 가산금납부고지서

번호	서울특별시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
주차장소	
차량번호	
차종	
입차발견시간	시 분
예정출차시간	시 분
출차시간	시 분
(주차)시간 (초과)	시간 분
부과사유	
주차(초과)요금 ₩ 주차(초과)시간 × 500원 × 2배 (30분 기준) 30분이내는 30분으로보고 1급저 노상주차장의 경우 2시간초과시 부터 30분당 1,000원을 부과한다.	
적용법규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납부일시	19 년 원 일
납부장소	시내은행 한국·산업은 행 제외)본, 지점, 농협, 수협, 축협, 중앙회 본 지점 및 우체국
주차안내원	㉠
19 년 월 일 서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영수증 (납부차료영수증)

번호	서울특별시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
099002	
차량번호	
(관)사업수입 (경)사업수입 (독)사용료수입(주차장요금및가산금)	
입금	
₩	
상기금액을 영수함.	
19 년 월 일	

[별지3호 서식]

주차요금 가산금 독촉 및 납부통지서(은행보편용)

서울특별시 주차장 시설비 특별회계 (관)사업수입(항)사업수입 (목)사용료수입		번 호	
차량번호			
주 소			
성 명			
구 분	주차요금	가산금	계
납부금액			
부과사유			
부과근거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시내 각은행, 본, 지점 농협 및 우체국		

위의 금액이 제납되었으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까지 완납치 아니 할때는 주차장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합니다.

19 년 월 일

구청장

②

영 수 증

서울특별시 주차장 시설비 특별회계 (관)사업수입(항)사업수입 (목)사용료수입		번 호	
차량번호			
주 소			
성 명			
구 분	주차요금	가산금	계
납부금액			
부과사유			
부과근거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납부기한	년 월 일		

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19 년 월 일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안내

-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차요금을 내지않고 도주한 경우
- 주차요금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 주차제기에 요금을 투입하지 않고 주차한 경우
- 주차요금 고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일까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부과근거: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 문의처

구청 도시정비과:

구 청 장

영수필 통지서 (구청통보용)

서울특별시 주차장 시설비 특별회계 (관)사업수입(항)사업수입 (목)사용료수입			번 호
차량번호			
주 소			
성 명			
구 분	주차요금	가산금	계
납부금액			
부과사유			
부과근거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납부기한	년	월	일
<p>상기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p> <p>19 년 월 일</p> <p>서울특별시 금고</p> <p style="text-align: right;">구청장 귀하</p>			

[별지 제4호서식]

일련번호 : No 018001

회수주차권 (1일용)

일 금 : 원정

주차장명 :

차량번호 :

발행일 : 199

현금출납원 :

서울시설관리공단

주 의 사 항

1. 이 영수증은 교환 또는 환부되지 아니함.
2. 이 영수증은 출차시 주차감시원에게 제시하고 출차함.
3. 분실시에는 재발급 되지 아니함.
4. 이 영수증은 차량내부 전면에 게시하여야 함.

[별지 제5호서식]

※ 태풍리 부상을 예견한 후 차량권면의 우측에단에 부착 하십시오.

№ 000751

89 정기주차권

주차장명

차량번호

금 액

유효기간



이 주차권은 발행처에서 사용 가능함. 주차권의 교환 또는 환부는 불가함.

지정된 주차장에서만 사용 가능함. 주차권의 교환 또는 환부는 불가함.

- 지정된 주차장에서만 사용 가능함.
- 주차권의 교환 또는 환부는 불가함.

교육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사무분장규칙중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0. 6. 20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상준

◎교육규칙제351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사무분장규칙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행정자료실 운영

제2조 제4항중 제4호를 제5호로 하되 동호
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민원사무의 총괄·조정·통제 및 지도
에 관한 사항

5. 비위진정·청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의
분임통제에 관한 사항

제2조 제4항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2조 제5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 제3항 제4호중 "실·국·과"를 "국(과)·
담당관의 주관"으로 한다.

제3조 제4항중 11호, 제2호, 제6호, 제7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2. 교육전문직의 임용(장제포함)

6.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7. 교육인사위원의 운영

8.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9. 제한제도 관리

제4조 제4항 제1호중 "공립의 유치원, 국민
학교"를 "공립국민학교"로 한다.

제4조 제5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5. 공립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교원인사

6. 사립유치원 교원의 연수 및 포상

제6조 제3항 제2호중 "사립강습소"를 "학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186호

도시계획사업(전세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변경허가

1. 서울시고시 제209호(87. 3. 27)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전세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 허가된 용산관광버스터미널 조성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허가하였기 동규칙 제11조에 따라 고시합
니다.

1990. 6. 16

서울특별시

- 가. 사업시행처: 변경사항 없음
- 나. 사업의종류 및 변경: 변경사항 없음
- 다. 사업시행 규모
 - 부지 면적: 변경사항 없음
 - 건물연면적: 변경사항 없음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사항
없음

<p>다. 사업시행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수년월일 : 변경사항 없음 · 준공예정년월일 : 변경전-'90. 6. 30 변경후-'91. 6. 30 <p>바. 수용 및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스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변경사항 없음</p> <p>사. 관계도서 : 생략</p>	<p>시설중 건설부 고시 제727호('89. 12. 4)로 변경결정 고시된 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1호 다음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고 같은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p> <p>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조구청 도시경비과 및 시립농산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p>
---	---

●서울특별시고시제188호

도시계획시설(녹지)지적승인

1990. 6.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

서울특별시

가. 도시계획시설(녹지)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의배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녹 지	서초구 양재동 216 (양재 1C번)	70,101.2	면적 증감없이 위치 일부조정 (138.5㎡)
변경	"	"	70,101.2	

나. 관련도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와 조구청 도시경비과 비치 도면과 같음.

사료관리법 제2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배합사료의 성분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194호

1990. 6. 19

수입배합사료성분등록

서울특별시

수입배합사료성분등록내역

제조업체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사료종류	사료명칭	사료용도	사료성분량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인	조칼슘	조인산
(주)미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29-6	김재방	나01-18	수입배합사료	애완견 사료 1호	저장, 성견, 임신견, 영양보충용	10.0	6.0	0.2	0.1	1.5	5.0
			나01-19	"	" 2호	상아지 영양보강용	10.0	9.0	0.1	0.1	1.0	5.0
			나01-20	"	" 3호	성견 다이어트용	7.0	1.5	0.1	0.1	2.5	5.0

제조업체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사료종류	사료명칭	사료용도	사료성분량					
							조단백질 %	조지방 %	칼슘 %	인 %	조섬유 %	조회분 %
(주)미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29-6	김채방	나01-21	수입배합사료	애완견사료 4호	자견, 성견, 번식견 주식용	이상 21.0	이상 7.0	이상 1.5	이상 1.0	이하 4.5	이하 10.0
			나01-22	"	" 5호	강아지주식용	28.0	7.0	2.0	1.0	4.0	10.0
			나01-23	"	" 6호	간식용	17.0	3.0	0.2	0.2	4.0	5.0
			나01-24	"	" 7호	"	20.0	8.0	1.0	0.5	3.5	10.0
			나01-25	"	" 8호	"	32.0	14.0	1.0	0.5	3.0	10.0
			나01-26	"	" 9호	"	23.0	6.0	0.2	0.2	3.0	5.0

<p>◎서울특별시고시제195호</p> <p>서울특별시문화재지정고시</p> <p>문화재보호법 제55조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p>	<p>보호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6. 18</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목록

종별	지정번호	명칭	지정물건	소재지	구조 및 규모	관리단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74호	순흥안씨 양도공파 묘역	(묘역) 151,758㎡ (묘역내) 묘 5기, 신도비 3개, 문무관석 12개, 장명등 5개, 묘전비 6개, 석상 5개, 사당 1동	구로구 시흥동 산126-1	(묘역) 지번: 구로구 시흥동 산 126-1 지목: 임야 지적: 151,758㎡ (묘역내) 지정물건 현황동일	순흥안씨 양도공파 종회

종별	지정번호	명칭	지정물건	지정토적				관리단체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8호	양천향교지	(토지) 1필지 1,782㎡	강서구 가양동 234	1,782㎡	사적지	국유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종별	지정번호	명칭	지정물건	지 정 토 지				관리단체
				지 번	지 적	지 목	소유자	
			(건물) 8동 71평					향교재단
서울 특별시 기념물	제9호	망원정지	(토지) 1필지 1,127㎡ (건물) 1동 40평	마포구 합정동 457-1	1,127㎡	임야	서유지	마포구청장
서울 특별시 기념물	제10호	보신각지	(토지) 12필지 2,906.8㎡ (건물) 1동 144평	종로구 관철동 102-9 102-7 102-6 102-5 45-10 45-5 45-6 45-9 45-7 45-3 45-4 13-21	34㎡ 44.3㎡ 34.2㎡ 65.1㎡ 13.6㎡ 475㎡ 996㎡ 62.5㎡ 340.8㎡ 191.7㎡ 240㎡ 101.8㎡	대 도로 대 대 대 대 도로 대 대 도로 대	서울시 " " " " 국유지 " 서울시 " " " " " " " " " " " " "	종로구청장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363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전문건설업양도인가내역

건설업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양도인가를 하였기 공고
합니다.

1990. 6. 14

서울특별시장

업종 및 면허번호	양도자			양수자			인가일
	상호	대표자	소재지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철물공사업 82-11-153	일흥기업	이이관	중구 오장동 139-11	인흥기업 (주)	이계동	중구 오장동 139-11	'90. 6. 14

●서울특별시공고제366호

천호제3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공사완료공고

도시 재개발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판리 처분 계획된 인가한 주택 개량재개발 천호 제3구역의 공사가 완료 되었기 도시 재개발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 합니다.

1990. 6. 20

서울특별시

가. 사업의 명칭 : 천호 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나. 시 행 자 : 천호 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 조합장 김상호

다. 시 행 기 간 : '86. 9. 26-'90. 5

라. 사업 계획에 의한 공종별 공사 내역

○건축시설

규모 : 아파트 지상4층-14층 1동 112세대

상가 지하2층-지상3층 1동

지하 주차장 지하4층-지하2층

건축면적 : 3,638.15㎡ (건축율49.6%)

건축연면적 : 42,514.45㎡ (용적율289.15%)

○토 지

대 지 면 적 : 7,327.6㎡

공공시설(도로) : 23.4㎡

계 : 7,351㎡

마. 사업비 재원별 내역(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367호

K·S 표 시 정 지 처 분

공업표준화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표시 정지 처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90. 6. 20

서울특별시

1. 업 체 명 : 홍창물산 주식회사
2. 대 표 자 : 손정수
3. 소 제 지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310-222
4. 규격번호 : KSC1303
5. 규 격 명 : 지시천기계기
6. 종류등급 : 직류전압계 25급 가동료일형
7. 처분사유 : KS규격타당
8. 처분기간 : '90. 6. (표시정지3월간)

구 고 시

●구로구고시제45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다 음 -

1. 사 업 명 : 민영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주)대도해미리 대표 김저태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가. 위 치 : 구로구 시흥동 989-11호
나. 대 지 면 적 : 1,297평방미터
다. 건축연면적 : 2,421.31평방미터
- 라. 규 모 : 아파트5층 1동 30세대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
4. 사업시행기간 : '90. 6. - 9. 12

1990. 6.

구로구청장

구 공 고

●강서구공고제29호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소행정처분공고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던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이본 공 고합니다.

1990. 6.

강 서 구 청 장

조 치 내 역

연번	지정 번호	업 소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반사항	조 치	조치기간
1	92	이 화 설 비	화곡본동 105-64	강홍식	무단이전	지정위소	
2	76	대 현 설 비	화곡1동 401-13	박대현	"	"	
3	110	신 흥 설 비	화곡4동 823-14	김종연	"	"	
4	96	현 대 설 비	발산1동 718-4	정만준	"	"	
5	86	경 기 설 비	화곡2동 398-17	박유수	"	"	
6	18	동 남 설 비	화곡2동 848-15	김종수	"	"	
7	40	건 우 설 비	방화1동 249-153	이윤용	"	시공정지3월 (청문용소)	'90.6.18 -9.17
8	44	삼 일 설 비	화곡2동 341-9	김형구	기술요원1인 부 축	시공정지2월	6.18 -8.17
9	11	로 캣 트 보 일 러	화곡1동 343-59	한신환	기 술 요 원 교육미이수	시공정지1월	6.18 -7.17
10	12	일 신 난 방 공사	화곡2동 372-12	이영의	"	"	"
11	57	현 대 설 비	염창동 96-7	고진만	"	"	"
12	59	대 통 설 비	화곡5동 1054-1	권순수	"	"	"
13	42	경 화 중 합 설 비	발산1동 697-6	이창수	"	"	"
14	30	우 연 설 비	화곡4동 794-1	심효직	"	"	"
15	9	삼 온 보 일 러	" 796-11	안승철	"	"	"

연번	지정번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준치	조치기간
16	99	극동종합 설비	공항동 683-1	엄정동	기술요원 교육미이수	시공정지 1월	6. 18 -7. 17
17	117	대영설비	화곡3동 1071-41	최병조	"	"	"

●마포구공고제60호

관인재교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하 성산제2동장의
관인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인규칙 제5조





규정에 외거 제교부함을 동규칙 제8조에 의
하여 공고합니다.

1990. 6. 16

마포구청장

○ 사용개시일자 : '90. 6. 21

○ 재교부 및 폐기인

인 영	신		규		폐		기	
								
공인명	성산제2동장인 및 계인 (민원사무전용)			성산제2동장인 및 계인 (민원사무전용)				

●도봉구공고제255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정지해제

다음 주택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되어 해제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 3규정에 외거 공고 합니다.

1990. 6

도봉구청장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영업정지일	영업정지해제일	비고
85-172	삼각주택(주)	홍기순외1	번동 437-2	90. 3. 7	'90. 6. 7	
87-185	화진기공(주)	박수환	도봉동579-1	"	"	
87-188	천우주택	채규대의1	수유동191-12	"	"	
89-196	유강기업(주)	박갑조	창동 731-55	"	"	
89-137	우광주택(주)	김중환	미아동318-5	"	"	

사 령

◎1990년 6월 16일자 지방별정직 6급상당이하 공무원 신규임용령 제227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허명구	지방별정직 9급상당공무원에 임함. 교통방송본부 근무를 명함.	신규
이종은	"	"
심선보	지방별정직 7급상당공무원에 임함. 교통방송본부 근무를 명함.	"
성기표	"	"
송옥석	"	"

지방별정직 5급상당 공무원 신규임용령 제228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백래룡	지방별정직 5급상당 공무원에 임함. 교통방송본부 근무를 명함. 업무과상에 포함.	신규

기능직 및 고용직공무원 전보령 제229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전미향	용산구	새종문화회관	지방사무보조원 (조무 10등급)
김효정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용산구	지방안내원

◎1990년 6월 13일자 6급공무원 파견령 제23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종화	사회과 파견 ('90. 6. 13 - '90. 12. 12)	중앙구	지방행정주사

◎1990년 6월 16일자 7급이하 공무원 전보령 제23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용탄	강남구	중앙하수처리장	지방행정서기
하덕창	서초구	"	"
박범서	중합건설본부	남지하수처리장	"
김수지	은평구	"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한상학	안양하수처리장	강서구	지방행정서기
이병노	탄천하수처리장	구로구	"
오진오	증방하수처리장	성동구	"
조동일	"	대문구	"
황판석	"	노원구	지방행정서기보
표석구	난지하수처리장	대문구	지방행정주사보
홍재선	"	동작구	지방행정서기
변반수	"	은평구	"
오산수	"	마포구	"
양동홍	교통방송본부	국민운동지원과	지방행정주사보
이동희	"	송파구	"
이선수	"	용산구	지방행정서기
안수준	국민운동지원과	성동구	지방행정주사보

◎1990년 6월 18일자 8급보건직 공무원 파견 명 제232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백용규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파견 ('90. 6. 18-'91. 5. 31)	중앙구	지방보건기원사보

기능직 공무원 전보 명 제233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택모	교통방송본부	새문문화회관	지방사무보조원 (조무 10등급)
허남순	교통방송본부	"	"

기능직 공무원 면직 명 제234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춘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총무과	지방전기장 (7등급)

인사 발령 행지 명 제235호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국 토목과 지방토목기과 토목기과에 임함.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국 토목과장에 보함.			한상주 '90. 5. 25 대령

◎1990년 6월 1일자	인사 발령 통지	령 제236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이사관		최 선 진
이사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 보함.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 사회과 지방서기관		이 서 용
서기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 사회과장에 보함.		
서울특별시 구로구 총무국 지방서기관		강 석 근
서기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구로구 총무국장에 보함.		
서울특별시 재무국 관재과 지방서기관		임 병 택
서기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재무국 관재과장에 보함.		
서울특별시 재무국 회계과장 서기관		송 용 석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진출을 명함.		
		대 통 령
지방서기관에 임함.		
서울시립대학교 사무국장 직무대리를 명함.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교통국 교통기획과장 서기관		안 종 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진출을 명함.		
		대 통 령
지방서기관에 임함.		
교통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를 명함.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총무국장 서기관		김 덕 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진출을 명함.		
		대 통 령
지방서기관에 임함.		
공무원교육원 교수부장 직무대리를 명함.		서울특별시장

1990년 6월 15일자 인사 발령 통지 령 제237호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시정개발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진출을 명함.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기획관리실 시정개발담당관 조직관리계장에 보함.	장 수 길 대 통 령 서울특별시장

1990년 6월 19일자 지방별정직 8급상당이하 면직 령 제238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권정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경찰국 면허과	지방별정직8급상당
조인자	"	"	지방별정직9급상당

1990년 6월 20일자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신규임용 령 제239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한선희	지방전송지원보시보 6호봉 총무과	신규

7급 공무원 징계 령 제24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영안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견책"에 처함.	통제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1990년 6월 16일자 **공무 국외 여행 명령 통보**

1. 다음과 같이 공무 국외 여행 명령이 있었기 통보함.

가. 여행 명령 사항

여행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청소 2과	지방화공 기과	송용기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휴스턴, L.A., 홍콩	'90. 6. 27 - 7. 11 (15일간)	시비 (12,363불)	산전외국 쓰레기 중계처리장 선제 운동관리실태 연수
"	지방전기 기사보	최용덕	"	"	"	"
종합건설본부 설비부	지방기계 기사	박성덕	"	"	"	"

서울특별시장

상수도사업본부사령

◎1990년 6월 11일자 6급 이하 지방기업 행정직 면직 령 제66호

인비 번호	성 명	제 칭	현 직	
			부 서	직 급
1	강 영 식 (571204-1010026)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부수도사업소	지방기업행정 서기보

◎1990년 6월 20일자 9급 기술직 지방공무원 정규임용 (시보해제) 령 제64호

인비 번호	성 명	제 칭		현 직	
		부 서	직 급	부 서	직 급
1	김 명 구	중부수도사업소	지방기계기원보	중부수도사업소	지방기계기원보시보
2	정 진 호	영등포수도사업소	"	영등포수도사업소	"
3	유 봉 희	보령동수원지사무소	"	보령동수원지사무소	"
4	서 승 완	강남수도사업소	"	강남수도사업소	"
5	조 현 외	동부수도사업소	"	동부수도사업소	"
6	손 제 우	구의수원지사무소	"	구의수원지사무소	"
7	이 형 주	서부수도사업소	"	서부수도사업소	"
8	김 학 범	강동수도사업소	"	강동수도사업소	"
9	황 봉 기	북부수도사업소	"	북부수도사업소	"
10	최 영 조	북부수도사업소	"	북부수도사업소	"
11	한 양 수	영등포수원지사무소	지방화공기원보	영등포수원지사무소	지방화공기원보시보
12	박 근 희	노량진수원지사무소	"	노량진수원지사무소	"
13	임 병 조	독도수원지사무소	"	독도수원지사무소	"
14	최 동 주	임사수원지사무소	"	임사수원지사무소	"
15	한 상 호	영등포수원지사무소	"	영등포수원지사무소	"
16	이 해 섯	선유수원지사무소	"	선유수원지사무소	"
17	김 인 구	보령동수원지사무소	"	보령동수원지사무소	"
18	하 태 선	팔당수원지사무소	"	팔당수원지사무소	"
19	최 진 수	김포수원지사무소	"	김포수원지사무소	"

인사 번호		성 명	제 정		현 직	
			부 서	급	부 서	직
1	이 수 복 (660705-117736)	강동수도사업소	지방화공기사보		송 목 구	지방화공기사보
상수도사업본부장						